

## 19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處分承認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6월 26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승인이유

- 지방관용차량 운영개선지침 및 시장지시사항 (자치구 의전용차량교체)에 의거, 정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형승용차를 감소한 중형승용차로 교체 사용코자 한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'91. 11. 25구입 사용중인 구청장 의전용차량(로얄프린스2.0)을 구의회 승인후 매각 처분하고 지방관용차량 운영개선 지침에 의거 추후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구청장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
- 매각처분대금 : 9,000천원 (한국감정원 감정가)

### 3. 승인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.

## 19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處分承認案

### 1. 현 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처 분 요 청		승 인		불 승 인	
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
계	차량 (프린스) 1	9,000				
처 분	차량 (프린스) 1	9,000				

### 2. 처분내역

(단위: 천원)

연번	구 분 품 목	구 정 수		정수물품처분 승인요청					
		실수	부족수	품 목	부서별	매 각 처분수	단 가	감정가	처분사유
1	차 량	110		로 알 프린스 (2.0)	총무과	1	16,200	9,000	관용차량 운영 개선지침 및 에너지절약

3.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